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당 법령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3. 주요내용

가.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또는 “○○제도의 폐지(현행 제○조 삭제)” 등

1)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음.” 또는 “현행 ---는 ---하여 --한 문제점이 있음.” 등으로 표현

* 1) 항목의 기재방법

- 대통령지시, 정책방향의 변경, 상황변동, 특정 사건의 발생 등 해당 제도(정책) 도입의 계기가 된 사항 기재
-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련 판례·결정례의 요약, 통계자료 등 현황자료 인용, 특정사건의 경위, 사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요약하여 활용

2) “----하던 것을 ----하도록 함” 또는 “---을 내용으로 하는 -- 제도를 도입함.” 등

* 2) 항목의 기재방법

- 해당 제도(정책)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새로 도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내용을 기술

3) ---하게 됨에 따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3) 항목의 기재방법

- 종전 제도의 변경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적으로 설명하거나 통계수치 또는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

나.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던 것을 -----하도록 함.”

* 내용에 따라 가. 나. 다. 등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작성 가능.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제목(“○○제도의 도입”)은 내용과 구분하여 기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

제26조제1항제2호아목 중 “구매하는”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구매해서”를 “구매 또는 임차해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조·구매하는”을 “제조·구매·임차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14조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를 “제14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조·구매”를 “제조·구매·임차”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2), 같은 목 3), 같은 목 4), 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6) 중 “제조·구매계약”을 각각 “제조·구매·임차계약”으로 하며,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구매하는”을 “구매·임차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구매하려”를 “구매·임차하려”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계약 또는 용역계약

자.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분류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

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제조·구매·
임차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5호마목·사목·아목”을 “제5호가목7)·마목·
사목·아목”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제52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
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
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
는 방법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단,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의
계약의 경우 당초계약의 입찰일)을”로, “같다)”를 “같다]”로 한다.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부정당업자의 위
반행위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발생하여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또는”으로 한다.

제111조의6제1항 중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를
“공사분야소위원회,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 및 국방·방산분야소위원

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조·구매계약 및 용역계약”을 “제조·구매·임차계약 및 용역계약(「방위사업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 ④ 국방·방산분야소위원회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 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 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과 제한사항등) ①-----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 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 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 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4. ----- -----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 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 11. (생략)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

1. ~ 8. (현행과 같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

10.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
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
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사. (생 략)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
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
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
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
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
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 타. (생 략)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 구매 또는 임차하는 ---

자. -----

---- 구매 또는 임차해서

차. ~ 타. (현행과 같음)

3. -----

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
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 라. (생략)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
조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 차. (생략)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
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

----- 제조·구매·임차
하는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제14
조, 「재난안전산업 진흥
법」 제14조,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
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
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에 관한 법률」 제18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7
조, 「보건의료기술 진흥
법」 제8조 또는 「해양수
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
조----

바. ~ 차. (현행과 같음)

4. -----

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가. ~ 마.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1) (생략)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
-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 제조·구매·임차 -----

가. ~ 마. (현행과 같음)

5. -----

가. -----

- 1) (현행과 같음)
- 2) -----
----- 제조·구매·임차계약 -----

3)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
품의 제조·구매계약 또
는 용역계약. 다만, 제30
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
는 물품의 제조·구매계
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
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 제조 · 구매 · 임차계
약 -----

-- 제조 · 구매 · 임차계
약 -----

4) -----

---- 제조 · 구매 · 임차

계약 -----

5) -----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 다) (생략)

-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신설>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 바. (생략)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제조·구매·임차
계약 -----

가) ~ 다) (현행과 같음)

- 6) -----

- 제조·구매·임차계약

- 7)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계약 또는 용역계약

나. -----
----- 구매·임차
하는 -----
-

다. ~ 바. (현행과 같음)

사. -----

----- 구매·임차하
려-----

아. (생략)
<신설>

② ~ ⑤ (생략)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사목·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3. (생략)

아. (현행과 같음)

자.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분류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제조·구매·임차하는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

-----.

1. ----- 제5
호(가목7)·마목·사목·아목-----

--

2.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생략)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 저. (생략)

<신설>

5. ~ 7. (생략)

③·④ (생략)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저. (현행과 같음)

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기업공제
조합

5. ~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1. 삭 제

2. (생략)

3.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단서
신설>

[illegible]

2. (현행과 같음)

3. -----

-----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
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
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

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예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상
을 낼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
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illegible]

② ~ ⑤ (생략)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생략)

② ~ ⑧ (생략)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② (생략)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부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단, 제28조제2항
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당
초계약의 입찰일)을-----
----- 같다]-----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부정당
업자의 위반행위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발생
하여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
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1. 2. (생략)

④ ~ ⑮ (생략)

제111조의6(소위원회) ① 위원회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
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
(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및 용역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조
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

경우 또는 -----

-----.

1. 2. (현행과 같음)

④ ~ ⑮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6(소위원회) ① -----

----- 공사분야소위원
회,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 및
국방·방산분야소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조·구매·임차계약 및
용역계약(「방위사업법」 제3
조제14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
은 제외한다)-----.

④ 국방·방산분야소위원회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과 관련된 분
쟁의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 ⑥ (생략) ⑦ 소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정을 작성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⑧ (생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⑧ ----- 제7항----- -----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213